

6 행정운영경비

6-1. 기본경비 집행현황

-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(A)	기본경비(B)	비율(B/A)	비 고
합 계	187,267	2,084	1.11%	
일반운영비	187,267	903	0.48%	
여 비		744	0.4%	
업무추진비		265	0.14%	
직무수행경비		80	0.04%	
자산취득비		92	0.05%	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‘행정운영경비의 설정’ 중 기본경비 항목
- ▶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(201-01)+공공운영비 (201-02), 여비는 국내여비 (202-01)+월액여비 (202-02),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+정원가산업무추진비 (203-02)+부서운영업무추진비 (203-04),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(204-01),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(405-01)

기본경비 연도별 변화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	168,470	164,348	166,228	176,813	187,267
기본경비	2,156	2,218	2,460	2,225	2,084
비율 (%)	1.28%	1.35%	1.48%	1.26%	1.11%



▶ '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

☞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 2012년 대비 2013년은 공무원수가 9명 증가하였으나, 부서별 예산절감을 통해서 기본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였기 때문입니다.

6-2. 자치단체 청사 관리·운영현황

☐ 우리 구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,358㎡이 적습니다.

(단위 : ㎡, 백만원)

우리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(㎡)	우리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(㎡)	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(㎡)	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(백만원)
4,095	6,453	△2,358	0

▶ '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' 의 지방청사(면적)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

6-3. 인건비 집행현황

☐ 우리 구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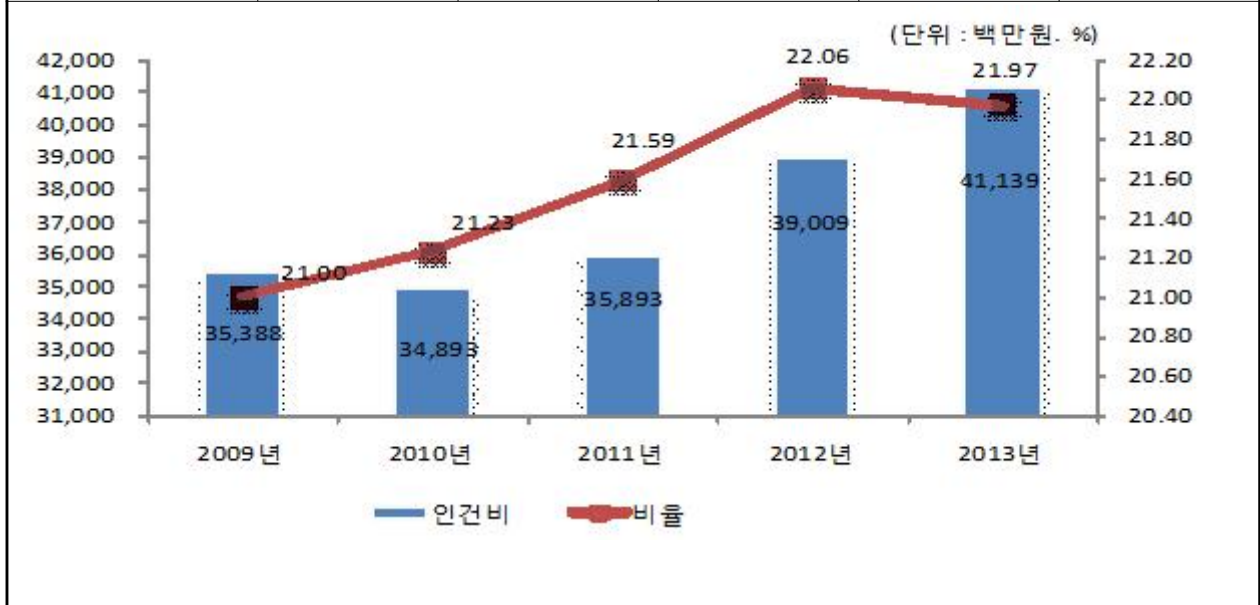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인건비 (B)	비율 (B/A)	비고
합 계	187,267	41,139	21.97%	
인건비(101)	187,267	33,914	18.11%	
직무수행경비(204)		956	0.51%	
포상금(303)		1,520	0.81%	
연금부담금 등(304)		4,749	2.54%	

- ▶ 인건비는 보수(101-01), 기타직보수(101-02), 무기계약근로자보수(101-03),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(204-02), 포상금은 성과상여금(303-02),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(304-01), 국민건강보험금(304-02)이 해당함
- ▶ 보수(101-01)는 기본급, 수당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명절휴가비, 가계지원비, 연가보상비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(7개 통계목)

인건비 연도별 변화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(A)	168,470	164,348	166,228	176,813	187,267
인건비(B)	35,388	34,893	35,893	39,009	41,139
인건비비율(B/A)	21%	21.23%	21.59%	22.06%	21.97%



▶ '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

6-4. 업무추진비 집행현황

☐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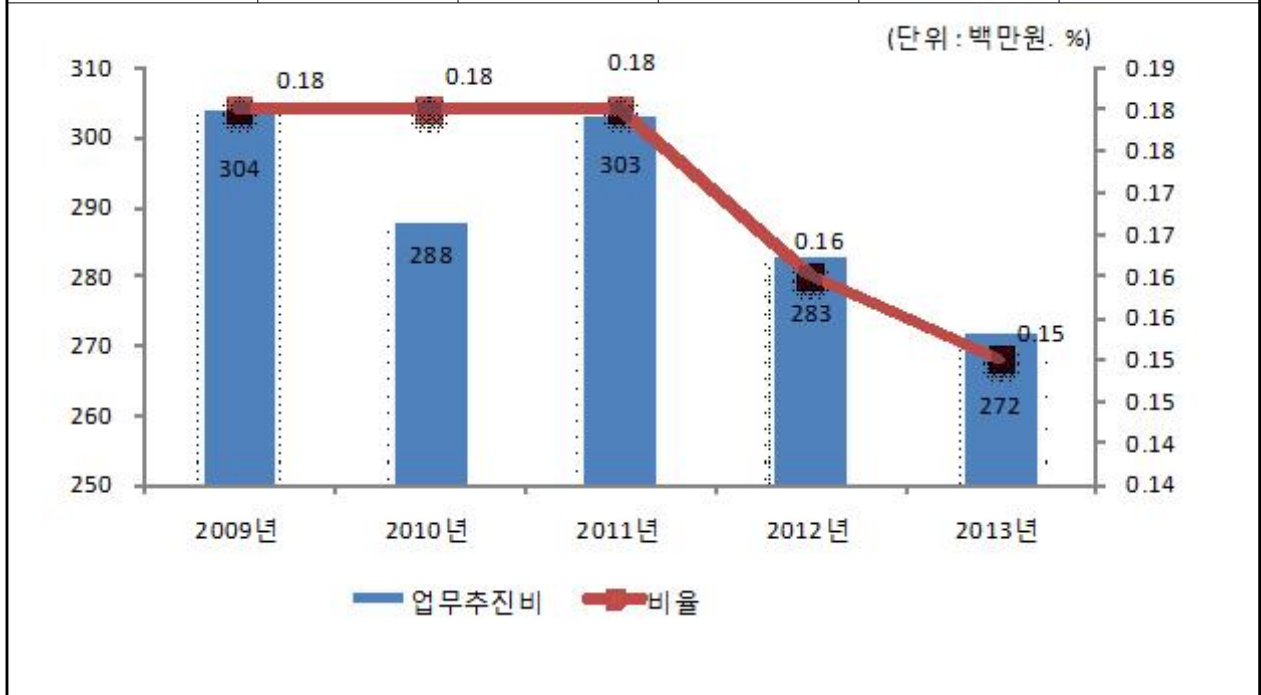
구 분	세출결산액(A)	업무추진비(B)	비율(B/A)	비 고
합 계	187,267	272	0.15%	
기관운영업무추진비(203-01)	187,267	146	0.08%	
시책추진업무추진비(203-03)		127	0.07%	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3년 결산결과 203-01, 203-03 집행총액

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	168,470	164,348	166,228	176,813	187,267
업무추진비	304	288	303	283	272
비율 (%)	0.18%	0.18%	0.18%	0.16%	0.15%



☞ 업무추진비가 감소한 이유는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을 최소화 시켰기 때문입니다.

◆ '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(203-03) 집행내역 **【별지 작성】**

6-5. 국외여비 집행현황

☐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총 출장 인원(명)	국외여비 집행액 (백만원)	단체장 포함여부
2013. 2.13~2.22	재정운영건전성 및 효율성을제고 및 재정담당공무원국제마인드함양	체코, 헝가리, 오스트리아, 독일	1	3	미포함
2013. 4.20~4.28	선진국 우수사례건문의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선진국 우수사례를구정에반영	독일, 오스트리아, 체코, 헝가리	4	6	"
2013. 4.22~5.3	선진국 우수사례 건문의기회를 제공하여글로벌마인드를함양하고 선진국우수사례를구정에반영	러시아, 핀란드,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	3	5	"
2013. 5.10~5.19	선진국 우수사례 건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선진국 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	프랑스, 스위스, 이탈리아, 오스트리아, 독일	5	8	"
2013. 5.28~6.1	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역량을 제고시켜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에 차질없는 역할을 수행토록 선진국 감사행정을 비교학습	일본	1	1	"
2013. 6.5~6.13	해외 선진도시 주차관리등 우수사례견학	미국, 캐나다	2	7	"
2013. 6.18~6.21	모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에 따른 환경미화원 현장인솔 및 친환경적인 쓰레기배출 실태과약등 벤치마킹	일본	1	1	"
2013. 9.2~9.13	중견실무리더 과정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대구를 주도할 핵심인 재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	스페인, 포르투갈, 모나코	2	9	"
2013. 9.2~9.13	중견실무리더 과정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대구를 주도할 핵심인 재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	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	1	4	"
2013. 9.24~10.2	외국의 선진조세제도운영실태를 총제적 비교분석 및 폭넓은안목을 배양하고 새로운 세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제고	오스트리아, 체코, 헝가리	2	6	"
2013. 9.29~10.2	연변 조선문독서사 도서전달 연변 조선족학교 및 도서관지원사업 및 교류협의	중국 (연길시)	1	1	"
2013. 11.25~12.2	선진외국의 의료보장체계 및 의료급여 제도전반에 대한 현지체험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	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	1	3	"

6-6.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
☐ 우리 구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세출결산액 (A)	의회경비 집행액 (B)	의회경비 비율 (B/A)	지방의원 정수 (C)	1인당 의회경비 (B/C)
187,267	410	0.22%	9	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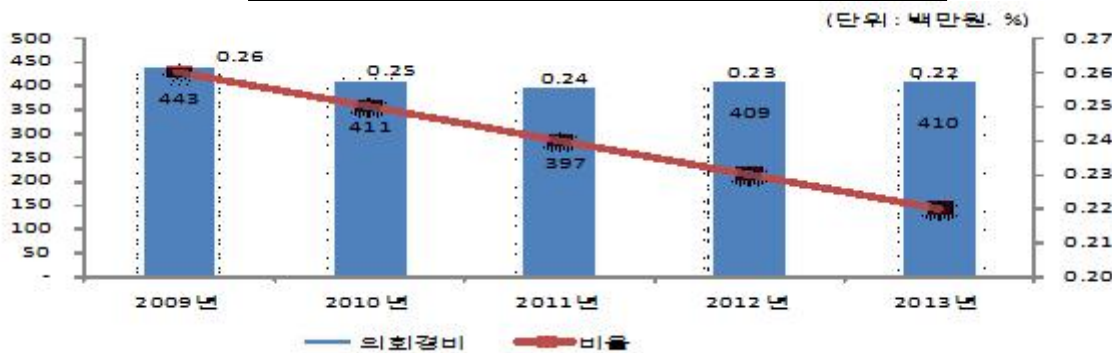
- ▶ 대상 회계 : 일반회계, '13년 결산결과 의회비(205-01~09) 집행액
- ▶ 의원 정원 : 9명 ('13.12.31 현재)

의회경비 연도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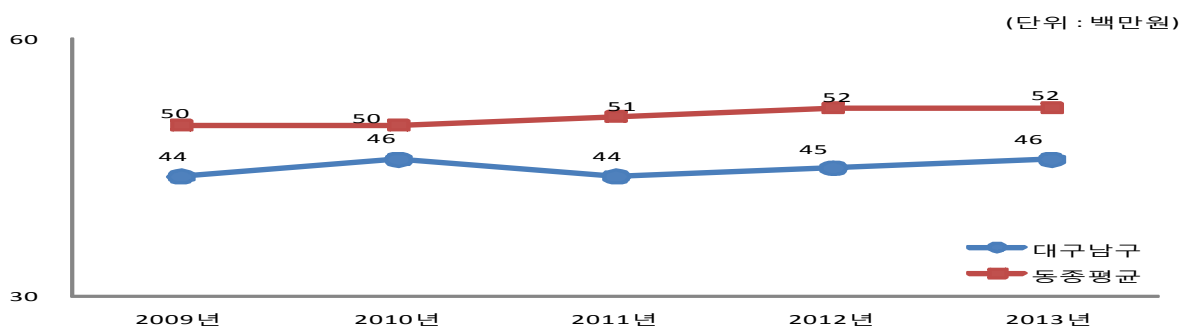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구 분	연도별 비교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(백만원)	168,470	164,348	166,228	176,813	187,267
의회경비(백만원)	443	411	397	409	410
의원 정수(명)	10	9	9	9	9
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(%)	0.26%	0.25%	0.24%	0.23%	0.22%
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(백만원)	44	46	44	45	46

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



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



6-7.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국외여비 집행액 (A)	지방의원 정수(명) (B)	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(A/B)
16	9	2

▶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, 지방의원 정수는 2013.12.31일 기준

☞ 국외여비 예산 17,600천원 중 1명 불참으로 15,800천원 집행되었고(1인 평균 1,975천원 집행) 자부담이 90만원~13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.

❖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

(단위 : 백만원, 명)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총 출장 인원(명)	국외여비 집행액 (백만원)
2013.3.31~ 2013.4. 7	북유럽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선진 복지제도 분석	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	10(의원 8, 수행직원 2)	21.7

6-8. 맞춤형복지비 현황

-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, 2013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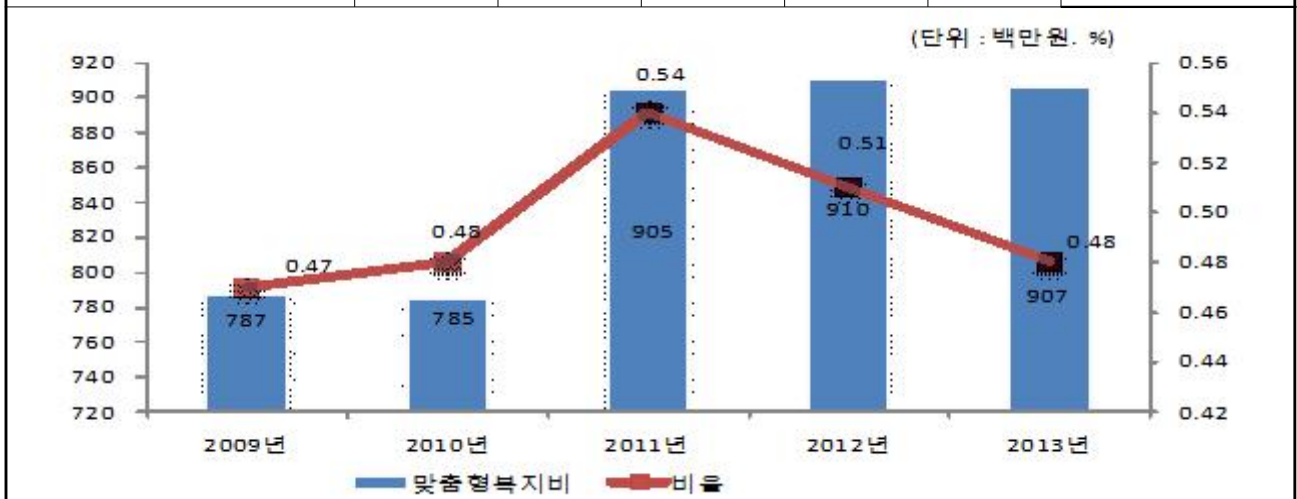
대상인원 (A)	세출 결산액(B)	맞춤형 복지비(C)	비율 (C/B)	1인당 평균배정액 (C/A)
630	187,267	907	0.48%	1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- ▶ 세출결산액 : '13년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
- ▶ 맞춤형복지비 : '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-사무관리비(201-01) 중 7.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

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구 분	연 도 별					비 고
	2009	2010	2011	2012	2013	
대상인원(A)	608	613	611	617	630	
세출결산액(B)	168,470	164,348	166,228	176,813	187,267	
맞춤형 복지비(C)	787	785	905	910	907	
비율(%) (C/B)	0.47%	0.48%	0.54%	0.51%	0.48%	
1인당 평균배정액(C/A)	1	1	1	1	1	



☞ 신분변동자(퇴직, 전출, 휴직 등)의 경우 신분변동일 기준 월할계산 방식으로 포인트를 배정함에 있어 2013년의 경우 연초 퇴직 비율이 높아 2012년 대비 퇴직자의 평균 배정포인트가 평균 200포인트 정도 줄어 총배정포인트가 다소 줄었습니다.

6-9. 연말지출 비율

☐ 우리 구에서 2013년 11월~12월 중에 지출(원인행위)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연말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비율 (B/A)
계	12,203	243	1.99%
시설비 (401-01)	12,145	234	1.93%
감리비 (401-02)	36	0	0%
시설부대비 (401-03)	22	9	41.47%
행사관련시설비 (401-04)	0	0	0%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본청분만 해당(직속기관, 사업소 등은 제외)

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 비교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세출결산액 (A)	20,657	13,672	15,933	18,511	12,203
연말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3,578	2,639	2,645	1,917	243
비율 (%) (B/A)	17.32%	19.30%	16.60%	10.36%	1.99%



연말지출 비율이 급격히 감소된 사유는 상반기에 공사에 대한 발주, 계약을 통하여 집행 및 준공을 통하여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.

6-10.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

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연말 체납누계액(A)	2012연말 체납누계액(B)	증감액(A-B)
합 계	10,563	12,461	△1,898
지방세	673	736	△63
세외수입	9,891	11,725	△1,834

<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>

지방세는 2013년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 증가로 이월체납액 63백만원 감소되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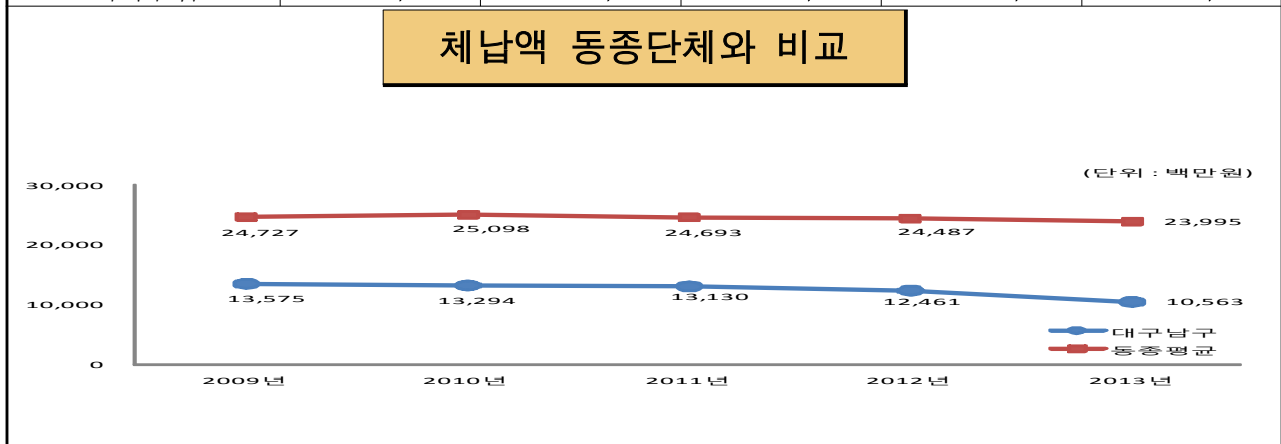
세외수입 체납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55억원 9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,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이 증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체납액 연도별 비교(총액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
합 계	13,575	13,294	13,130	12,461	10,563
지방세	833	652	795	736	673
세외수입	12,742	12,643	12,335	11,725	9,891

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



<연도별 감소 사유>

☞ 세외수입 체납의 대부분인 과태료에 관하여 2008년 6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규정 신설 및 고액·상습 체납방지를 위한 보완수단의 도입으로 과태료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“과태료는 안내도 된다”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로 인하여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☞ 또한, 세외수입의 적극적 결손정리로 전년대비 체납액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.